

의안번호	제 258 호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6일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16일
발 의 자 : 육미선, 박상돈, 최경천,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박문희

1. 제안이유

-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 3조)
- 나.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다. 도지사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시군 및 의료기관 등에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마. 도내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한 공공기관에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바. 도내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1조)
- 사. 기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 67호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첨부 제외 사유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충청북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이하 “장기” 라 한다)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 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 (이하 “접수창구” 라 한다)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 (이하 “유가족” 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북도민 (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하고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 하여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과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의료기관등에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② 도지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기리고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9조(홍보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증 장려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도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골수·안구
 -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배우자
 - 나. 직계비속
 - 다. 직계존속
 - 라. 형제자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 · 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 · 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 · 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 · 관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 · 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첨부제외 사유

- 이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념사업 (제7조), 장기이식등록기관, 접수창구 설치 공공기관 홍보경비 지원 (제9조), 기증 장려활동 추진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제11조)은 권고 형식의 규정이며, 지원 규모·대상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